

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2 - 60 |
|----------|-----------|

| | |
|-----|------|
| 제출자 | 거창군수 |
|-----|------|

1. 제안이유

-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‘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’ 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고
-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웅양면 곰내미권역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추진개요

- 사업명 :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
- 사업자 :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지영
- 사업기간 : 2022년 6월 ~ 12월(6개월간)
- 발전용량 : 20kw
- 사업비 : 44,000천원(군 39,600, 자부담 4,400)
- 연간수익 : 4,200~4,600천원 정도

※ 수익금 사용 : 웅양면 곰내미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우선 집행하여야하며, 추가 이익에 대하여는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제반사업 및 주민복지증진과 화합도모 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업(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)에 사용

나. 추진사항

- 2022. 06. : 전기사업허가 법인 설립 추진 중

다. 재산표시

| 위치 | 면적 (㎡) | 설치 (㎡) | 설치용량 (kW) | 사용허가신청자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웅양면 노현리 314 (주차장) | 4,956 | 250 | 20 | 웅양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지영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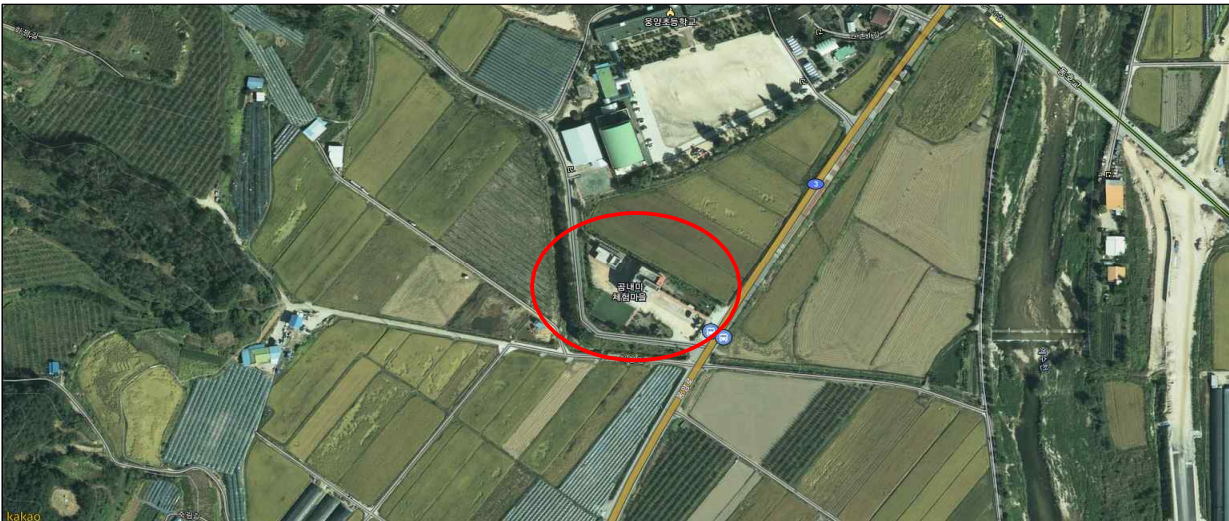
라. 향후 추진계획

- 2022. 7. :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(행복농촌과)
 - 공유재산 사용·수익 허가 후 사용료 부과 및 철거(원상복구) 비용 예치
- 2022. 7. ~ 8. : 전기발전사업 허가(경제교통과)

3. 관련법규 : 붙임참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3조,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촉진법」 제26조
- 「거창군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」 제12조 4항

4.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위치도 :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314 (지목:대지)



현장사진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】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】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2.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·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
3.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
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】

제26조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

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“라 한다)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(隨意契約)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**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**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**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**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제31조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센터(이하 “센터“라 한다)로부터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.

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【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】

제12조(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 ① 군수는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에 따라 생산하는 신·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부의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.

③ 군수는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,

그 동의 절차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다.